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37호 2021. 12. 9.(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1416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 예방, 제도 변경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나.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군수는 교육 대상자, 일시, 장소, 내용, 비용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다. 교육대상 및 교육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군수는 노래연습장업 신규 등록자, 기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반기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라.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강사는 학계, 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함

마. 교육통지서 송부 및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통지서 통지, 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 교부, 교육대상 업소 및 이수자에 대한 명부 작성·비치, 교육실적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함

바. 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군수는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함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yumin701@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3) 팩스 : 054-650-63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문화관광과(전화 : 054-650-69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 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
2.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교육 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교육대상) ①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
 2. 기존의 노래연습장업자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장소 및 교육 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 통지서를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 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군수는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